

93년에 制定된 條例로서 서울特別市公職者倫理委員會의 構成과 運營에 관한 細部事項을 規定하고 있습니다.

오늘 同 條例改正案을 提出하게 된 理由는 倫理委員會 委員 9名 中에는 2名의 公務員 身分을 가진 委員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條例에서 이들의 任期를 任命 당시의 職位에 在職中인 期間으로 規定하고 있어서 補職 변경시마다 委員을 교체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 補職 그 자체가 倫理委員會 委員으로서 道德性이나 倫理性을 反映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任期 規定을 현실에 맞게 고치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난해까지 登錄財産審査權中에 金融資産에 관하여는 金融實名 去來 및 秘密 保障에 관한 緊急財政經濟命令에 의하여 사실 上 實査가 곤란했었습니다만 작년 12月 31日 公職者倫理法이 改正 公布되면서 金融資産에 대한 實査規定이 新設되게 됨에 따라 關聯 條項의 순서가 단순히 바뀐데 따른 條例上의 根據 規定을 순서에 맞게 改正하는 案이 되겠습니다.

主要骨子を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案 第4條第2項에서 市所屬 公務員인 委員의 任期를 任命 당시의 職位에 在職中인 期間에서 任命 당시의 職級에 在職中인 期間으로 改正하고,

둘째, 案 第3條第1項2號에서는 上位法 根據 條項이 종전 第8條第11項에서 第8條第12項으로 변경됨에 따라 關聯條項을 이에 맞게 改正하는 것이고, 나머지 案 第6條第1項1號, 案 第10條第1項 또 案 第11條第1項, 案 第12條, 案 第13條 등도 위와 같이 上位法의 根據條項이 변경됨에 따라서 단순히 이 條項을 上位法에 맞도록 이렇게 순서를 맞추는 이런 內容이 되었고, 구체적인 案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上位法에 맞게끔 순서를 나열하는 이런 事項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審査해서 저희가 提出한 이 案이 上位法의 어떤 변경이라든지 其他 이런 事項은

아니기 때문에 委員님들께서 提出된 案대로 審議 議決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禧柱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提案된 案件에 대해 各各 檢討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文孝 專門委員 鄭文孝입니다.

먼저 서울特別市民願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報告)

1. 委員會 回附

- 가. 提案者 및 提案日字: 서울特別市長(95.5.2)
- 나. 回附日字: 95.5.3
- 다. 上程日字: 第77回 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95.5.11)

2. 提案說明의 要旨

가. 提案理由

對話를 통한 調整, 統制로 市政의 信賴性을 높이고 날로 多樣化, 專門化되어가는 民願에 對하여 合理的 解決方案을 摸索하며, 行政支援體制를 確立하기 爲하여 行政規制및民願事務基本法施行令 및 서울特別市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에 따라 서울特別市民願審議委員會條例의 機能과 委員長, 副委員長의 職位를 調整하고, 幹事 및 書記의 職位를 改正된 名稱으로 變更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서울特別市民願審議委員會條例의 法的 根據 追加(案 第1條)
- 民願審議委員會의 審議對象과 審議를 省略할 수 있는 民願을 區分新設(案 第2條)
- 委員長, 副委員長의 職位調整 및 幹事, 書記의 職位名稱 變更(案 第3條第2項 및 第9條第2項)
 - 委員長: 市長 → 副市長, 副委員長: 副市長 → 企劃管理室長
 - 幹事: 市民生活課長 → 民願擔當官

書記：市民生活課 擔當係長→民願總括係長

다. 參考事項

- 關聯法令：行政規制 및 民願事務基本法施行令 및 서울特別市行政機構設置條例
- 豫算措置：別途措置 必要없음
- 合 意：必要없음

3. 檢討意見

가. 現 況

- 現行條例는 1989.5.19 條例 第2447號로 制定, 1992.1.14 서울特別市行政機構設置條例 改正에 따라 幹事의 職名을 變更하는 1次 改正을 거친 條例로써 本文 11個 條項, 附則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制定當時에는 市政의 民願事項을 對話를 通하여 解決하기 爲하여 民願 審査委員會를 設置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으나,
- 1994.1.7 法律 第4735號로 行政規制 및 民願事務基本法이 制定되어 行政과 關聯된 國民의 不便과 負擔을 줄이고 持續的인 行政改善을 圖謀하여 國民의 權益을 保護하고 公正한 行政運營을 期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法律制定과 1994.4.7 大統領令 第14200號로 同法施行令이 制定되어 本 條例의 上位 準據法令이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나. 運營上的 問題點

- 現行條例上 民願審議委員會의 機能을 包括적으로 規定하여 正當한 民願事項에 對한 處理方案 提示 또는 是正建議, 不當하거나 無理한 民願事項에 對한 民願人의 說得, 其他 民願事務에 關聯된 制度의 改善 建議를 하는 3個項의 機能을 設定하고 있으나, 새로 制定된 行政規制 및 民願事務基本法施行令에는 民願審議委員會에서 審査可能對象과 審査不可能對象을 明白히 區分하여 規定하고 있으나, 現行條例에는 審査할 수 없는 事由가 明白한 事項도 審査

對象으로 하기 때문에 效率性이 없을 뿐 아니라 行政浪費的 要素가 發生되고 있습니다.

- 同條例 第3條(構成) 第2項에는 委員長은 서울特別市長이 되고, 副委員長은 서울特別市 副市長이 當然職으로 規定하고 있으나, 多樣하고 複雜한 서울市政 全般에 對한 民願事項을 擔當 處理하는 民願審議委員會의 機能을 市長이 當然職 委員長이 되는 것은 實情에 附合하지 못하고 있으며,
- 行政規制 및 民願事務基本法施行令 第37條 第3項에는 民願調整委員會는 當該機關의 副機關長이 主宰하고, 處理部署의 局長과 關係部署의 局長 및 監查擔當官으로 構成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고 規定하고 있어, 現行條例는 現實과 附合치 못하는 不合理한 點이 發見되고 있습니다.

다. 關聯法令의 改正

- 本 條例의 上位 準據法令인 行政規制 및 民願事務基本法과 同法施行令이 現行 條例 制定 當時에는 制定되지 않았으나, 1994.4.7 大統領令 第14200號로 새로 制定되었으므로, 民願審議委員會의 機能을 明白히 하고, 그 構成에 있어서 委員長과 副委員長도 現實에 附合되도록 上位 準據法令에 明示한대로 委員長은 副市長으로, 副委員長은 企劃 管理室長으로 調整하며,
- 同條例 第9條(幹事) 第2項에는 委員會의 幹事의 職位는 서울特別市行政機構設置條例가 1995.3.20 條例 第3177號로 改正되어 幹事는 市民生活課長을 民願 擔當官으로 變更하고, 書記는 市民生活課 擔當係長을 民願擔當官 民願總括係長으로 變更 調整하는 것입니다.

라. 結 語

- 本 條例改正案은 現行條例 制定當時에는 上位 準據法令인 行政規制 및 民願事務基本法과 同法施行令이 制定되지 않

았으나, 1994.1.7 위 法律과 1994.4.7 同法施行令이 制定되었으므로, 民願審議 委員會의 機能이나 構成을 上位 準據 法令의 內容대로 改正하는 것은 條例 立法體系上 妥當한 것으로 보아지며,

- 서울特別市行政機構設置條例의 改正으로 本 條例上 幹事와 書記의 職位를 改正된 職位로 變更調整하는 것은 合理的인 改正案으로 思料됩니다.

다음은 서울特別市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 및 運營 등에 관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報告)

1. 委員會 回附

- 가. 提案者 및 提案日字 : 서울特別市長(95.5.2)
- 나. 回附日字 : 95.5.3
- 다. 上程日字 : 第77回 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95.5.11)

2. 提案說明의 要旨

가. 提案理由

- 서울特別市公職者倫理委員會의 市所屬 公務員인 委員의 任期를 任用當時의 職位에 在職中인 期間으로 制限하고 있어, 委員은 擔當職位보다 道德性·清廉性 等 個人的 能力基準에 依해 任命하는 任命趣旨에 反할 뿐 아니라, 特別한 缺格事由가 없음에도 市の 轉補人事時 다시 任免하거나 再任命해야 하는 等の 不合理的 點이 있어 이를 改善하고,
- '94.12.31 公職者倫理法改正(法律 第4853號)時 一部 條文이 變更되어 條例上의 關聯條項을 一致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서울特別市公職者倫理委員會 委員의 任期中 所屬公務員인 境遇, “任命當時의 職位에 在職中인 期間”을 “任命當時의 職級에 在職中인 期間”으로 調整(案 第4條第2項)

- 公職者倫理法 改正에 따른 條例上의 關聯條文 一致 : 6個條 (案 第3條第1項第2號, 第6條第2項第1號, 第10條第1項, 第11條第1項, 第12條 및 第13條)

다. 參考事項

- 關係法令 : 公職者倫理法
- 豫算措置 : 別途措置 必要없음.
- 合 意 : 必要없음.

3. 檢討意見

가. 現 況

- 現行條例는 1993.9.6 條例 第3021號로 制定 18個條項 附則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第1條 目的에는 公職者倫理法 第9條 및 第21條의 規定에 依하여 서울特別市公職者倫理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 等に 關한 事項과 公職者倫理法 施行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하여 條例制定 根據와 趣旨을 밝히고 있으며, 그 主要內容으로는 서울特別市公職者倫理委員會의 構成, 機能, 委員長 및 委員의 任期, 委員會會議, 財産登錄의 審査報告, 移送, 資料提出 等を 規定하여 現在 運營中에 있습니다.

나. 運營上의 問題點

- 1993.9.6 制定된 現行條例를 現在까지 運營하면서, 同條例 第2條(構成) 第1項의 規定에 依하면 9人의 委員 中 5人은 法官, 教育者 또는 學識과 德望이 있는者 中 市議會議長과 協議 委囑하고, 4人은 市議員 2名과 1級以上인 서울特別市所屬 公務員 2名으로 構成토록 規定하고 있으며,
- 同條例 第4條(委員長 및 委員의 任期) 第1項은 모든 委員의 任期를 2年으로 하되, 1次에 限하여 連任할 수 있도록 하면서 第2項에는 市所屬公務員인 委員의 任期를 前 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任命當時의 職位에 在職中인 期間으로 制限하고 있어 公務員 身分으